

기 체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한·EU FTA와 더불어 한·미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정부에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소속되어 있는 농수축산연합회에서는 정부 및 한나라당(9월 6일), 민주당(8월 19일) 당대표에게 피해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. 이러한 대책요구사항을 회원님들께서 숙지하시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지자체 및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〈편집자 주〉

한·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농어업계 선대책 요구사항

– 10대 요구사항 및 30대 핵심관찰 과제 –

1. 무역조정을 통한 공정한 FTA 체결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WTO체제하에서 농업강대국과 FTA 추진으로 자동차, 반도체 등 수혜산업은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, 피해산업인 농축수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
- 실제, 6대 대기업들은 당기순이익은 2007년 33조8천억원에서 2011년 66조6천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났으며, 한·미 FTA 타결 시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분야는 매년 1조5억 원의 수출 증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
- 이에 비해 350만 농어업인들의 소득은 2009년 농업소득은 9,689천원으로 2004년 12,050천원보다 19.5% 감소했는데, 더욱이 한·미 FTA가 타결 될 경우 농업인들은 2조2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의 피해

가 있을 것으로 예상

- 이와 같이 FTA로 통해 이득을 본 산업이 자본의 재분배를 통해 피해 산업에 지원을 강구해야 공정한 FTA, 산업간 동반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부합될 것임<목적세>.

〈연도별 축산물 수입관세의 축산부분 지원액〉

(단위 : 억원)

구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
농특회계 전입 축산물수입관세	6,990	7,996	9,450	10,300
축산부문지원액 (비율)	2,049 (29.3)	1,469 (18.4)	2,121 (22.4)	2,734 (26.5)
농특회계사업	2,049	1,469	2,121	1,629
FTA기금			(유보 1,091)	1,105

* 2006년 대비 2009년 현재 수입관세 증가액(율) : 3,310억원(47.4%)
증가

* 2006년 대비 2009년 현재 축산부문 지원액(율) : 685억원(33.4%)
증가

자료 : 농협중앙회

- 또한,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수입 증가 및 FTA 확대 등으로 국내 농업과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세 수입의 농업 부문 지원액은 낮은 수준임.
- 특히, 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농축수산농가들의 소득 인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특회계가 아닌 농축수산농가 소득안정화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 함<농가소득안정화기금>.

나. 요구사항

1-1. 무역조정을 통한 공정한 FTA 체결

- 무역조정지원법 재개정을 통해 FTA체결로 수출이 증액(체결 전후 증책분) 된 부분 만큼 목적세를 신설하여 피해산업구제에 대한 기금으로 사용

1-2. 관세 수입 전액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 전환

- 농축산물 수입관세 중 50% 수준을 해당 품목 가격안정화기금으로 전입하여 농축수산분야의 경쟁력제고에 안정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목적세화 해야 함.
- 물론, 농특회계로 관세 수입이 전입되고 있지만 농특회계는 일반 세수입으로 확충하고 관세 수입은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특정 목적기금으로 활용해야 함.

2.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어가소득 안정망 확충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피해보전직불제는 매우 까다로운 발동 요건

으로 인해 발동한 사례가 전무하여 사문화되고 있음. 실제, 한·칠레 FTA 체결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한 사례가 없어 관련 예산이 모두 불용 처리됨.

-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보전직불제가 우선 7년이라는 한시성, 그리고 점진적 관세 인하 등을 감안하면 조수입이 20% 이상 줄어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,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20%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 부담은 매우 클 수밖에 없음<피해보전직불제>.

<가격 20% 하락시의 소득감소율>

품목	소득률	소득감소율	품목	소득률	소득감소율
한육우	33	61	포도	73	27
낙농	47	43	사과	68	29
양파	74	31	대두	72	28

자료 : 농촌진흥청, 표준소득자료

- 미국의 농업법, 유럽연합(EU)의 공동농업정책(CAP)은 수십년 전부터 다양한 소득보전장치를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왔음.

- 특히 1990년대 이후 이들 농업보호정책의 개혁이 이뤄지던 시기에도, 미국과 유럽연합은 과거의 가격지지 수준을 인하하는 대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직접지불방식으로 보전하여 왔음.

- 특히, 미국은 농가소득의 약 35%가 각종 명목의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중 쌀 농가소득 중 보조금은 75%를 차지하고 있음.
-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직불금 예산이 농림예산 대비 10%로 미비한 수준이고 그나마도 쌀 직불금에 95% 이상 집중되어 있음<농가단위직불제, 쌀 목표가격>.

나. 요구사항

- 직불제 예산의 대폭 확대를 통한 쌀 직불제 유지 및 목표가격 10년 동결, 농가단위직불제 도입, 피해보전직불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함<대전제>.

2-1. 현실적인 피해보전직불제 제도개선

- 기준가격 : (현행) 85% ⇌ (변경) 100%
- 소득보전율 : (현행) 90% ⇌ (변경) 95%
- 유효기간 : (현행) 7년 ⇌ (변경) 관세 철폐와 연동하여 폐지

2-2. 밭농업직불제를 골자로 한 농가단위직불제 도입

- 밭작물 및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직불제를 도입하는 농가단위직불제를 도입해야 함.

2-3. 쌀 목표가격 10년 동결 및 보전율 상향조정

- 쌀 목표가격 : (현행) 2012년도 하락 예상 ⇌ 쌀 목표가격 10년 동결
- 보전율 : (현행) 85% ⇌ (변경) 100%

3.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마련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해당 도매시장에서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
- 그러나 대부분 공영도매시장이 대도시에 위치하여 있어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

은 유권자인 소비자 편향적으로 모든 행정이 이뤄 질 수밖에 없어 산지를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-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공정한 행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전문성, 농업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유리한 측면이 있음<도매법인 지정권>.

□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19개소가 10년 이상 노후화 된 시설이며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고 지원(보조율 30%)을 통해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임<시설현대화>.

○ 대부분 도매시장에서는 저온창고 부족, 매장 저온화 시스템 미비 등으로 상온에서 유통시켜 상품성을 훼손 할 뿐만 아니라 대형소매점 등에서 상품화를 요구해도 관련 시설 미비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도매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
- 노후시장 현대화의 경우,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, 현행 국고 보조비율(30%)로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서 사업추진의 문제가 발생

□ 정부는 도매시장 상장거래 정착 및 산지집하, 대금결제 기능 강화를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소비자유통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 출하촉진자금을 금리 4%에 1년 거치 조건으로 응자 지원하고 있음<출하촉진 자금>.

○ 그러나 이 같은 출하촉진자금은 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.

- 급변하는 소비자시장에서 산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발

전과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하촉진자금의 확대와 금리 인하가 필요 함.

나. 요구사항

3-1.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 환수

- 중앙도매시장 법인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해야 함.

3-2.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부 보조 확대

-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정부 보조비율을 현행 30%에서 50%로 상향조정해야 함.

3-3. 출하촉진자금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

- 출하촉진자금의 규모를 1,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4%에서 1%로 인하해야 함.

4. 후계농업인력 육성 대책 마련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농어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·농촌은 신규후계농업인이 유입되지 않고, 반면 고령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'자본의 실패'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<후계인력육성>.

- 실제,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자 34%, 부녀농가 52%로 고령화·부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식량안보 위협은 물론 농촌의 어메니티 보존에도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.

- 이에 농어업에 종사하겠다는 신규후계농업인에 정부와 지자체가 전향적으로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 할 필요성이 있음.

- 청년 후계농업인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될 예정. 만약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폐지 할 경우 신규후계농업인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 할 뿐만 아니라 군복무기간 중 영농 단절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됨<병역대체복무제도>.

- 또한, 농협에서는 농작업 대행 및 생산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(특히, 대형농기계) 부족으로 정책 시행 효과 달성을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 함.

나. 요구사항

4-1. 후계농업인 유입 및 육성 대책 마련

구 분	항 목	제도개선 건의사항
후계농업인 유입 정책	지원 자금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리 인하 1% 인하 · 농신보 특례보증 한도 확대 · 부분보증 폐지 · 자금 지원 용도 분야 확대
	선정 및 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업인단체장 추천서 포함 · 선발시기 개편 및 홍보 강화
	영농 승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증여세 감면 범위 확대
후계농업인 육성 정책	지원 자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·3차 지원 금리 1% 인하 · 농신보 특례보증 한도 확대 ·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
	선정 및 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금 선정의 현장성 강화 · 신청 절차 간소화
	병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병역대체복무제도 영구화
	육성 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후계농업인 육성 전담 조직 설립

4-2. 청년 후계농업인력 병역대체복무제도 영구화

-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신설

5. 농·축산물 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

가. 한·육우

1) 현황 및 문제점

- 한·미 FTA 쇠고기 협상 내용
 - 한육우(40%) 관세를 15년 후 철폐
 - 쇠고기 관세 철폐 기간 중에만 농산물특별 긴급수입 제한조치 발동이 가능
- 쇠고기 세이프가드
 -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비현실적임.
 - 발효 1년차에는 27만톤이 넘어야 가능하고, 15년차는 36만톤이 넘어야 발동, 이는 국내 연평균 소비량(35만 8천톤)을 넘는 수치라 세이프가드 발동은 불가능
- 미국산의 가격경쟁력
 - 국산과 미국산의 도매 가격차는 40%가 넘게 차이남.
 - 관세가 철폐될 경우, 한우고기 중하위등급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.
 - * 미국은 풍부한 곡물사료로 비육하는 등 낮은 생산비로 쇠고기 생산이 가능하기에 가격경쟁이 불가

2) 요구사항

5-1. 소직불제 도입, 사료가격안정제도 대책 마련(한·육우)

- 소직불제 도입
 - 비육우 출하가격 안정제 대책
 - 가격이 기준가격(5년 평균) 이하로 떨어

질 경우, 하락분의 90%이상의 보전금을 지원

□ 사료가격 안정 대책

- 배합사료의 효율적 공급을 통한 사료가격 안정화
 -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규모 증액 및 지원조건 개선
 - * (2008)지원규모 823억원 ⇒ (개선)2,400억원
 - * 지원조건 1년, 연리 3~4% 무이자
 - 배합사료 수입 원료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기존 항만의 부두 일부를 사료원료 전용 부두로 지정하여 운영

나. 돼지고기

1) 현황 및 문제점

- 한·미 FTA 돼지고기 협상 내용
 - 냉장 삼겹살, 갈비, 목살을 10년 후 관세 폐지
 -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2014년부터 관세 폐지(도체와 이분도체, 전·후지, 냉동육, 식용 설육, 돼지고기 가공품)
 - 2년 연장하여 냉동기타(목살, 갈비살 등) 2016. 1. 1 관세폐지

□ 미국산 가격경쟁력

- 가격 격차 및 대체관계로 인한 피해 우려
 - 국산 삼겹살 대비 미국산 냉장쇠고기 가격은 60%, 냉동쇠고기는 40% 수준
 - 삼겹살, 목살의 경우 국산 대비 미국산 가격은 각각 32%, 38% 수준

□ 양돈농가 수 감소, 농가 어려움 가중

- 2006년 12월 : 11,300농가 ⇒ 2009년 12월 : 7,962농가(30% 감소)
 - 양돈농가 사료가격 급등과 생산성 악화로 3,300농가 폐업, 도산

2) 요구사항

5-2. 청정화 사업, 한계농가 폐업지원제도 마련(돼지)

-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책
 - 안전성강화를 위해 사료검사기관 검사장비 지원
 - 농협, 사료협회, 단미사료협회 검사연구소 : 20억 × 5년 = 100억
 - 도축장 및 유통시설 집중화 지원
 -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금 마련 : 10억원 × 50개소 = 500억원
 - 우수도축장 및 육가공공장 30개소 × 10억 = 300억(무이자 3년 지원)
- 한계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
 - 경쟁력 없는 소규모 영세 농가의 폐업 및 전업 지원
 - 10년간 영업 이익 보상
 - 농장 판매 시 양도세 면제,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, 법인세 면제

다. 낙농

1) 현황 및 문제점

- 한·미 FTA 낙농품 협상 내용
 - 탈지분유, 전지분유, 연유는 현행관세 - 176%/TRQ 20~40%유지하나 무관세 쿼터 5천톤 제공(매년 3%증량)
 - 치즈와 각 유제품 10~15년 후 관세 철폐
 - 치즈 무관세 쿼터 14년 7천톤 제공(매년 3% 증량), 밀크와 크림 10~15년 후 관세 철폐, 버터와 유장 10년 후 관세 철폐
- 치즈산업 피해
 - 무관세 쿼터 제공량 과다
 - 분유, 치즈, 버터, 유장의 무관세 쿼터량이 원유환산 15톤 수준으로 과다하다는 분석

- 치즈류 관세 철폐 및 무관세 쿼터 제공으로 국내 치즈산업 성장 가능성이 막힘.

2) 요구사항

5-3. 학교급식 및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확대(낙농)

-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
 - 중·고등학교 급식율 향상 필요
 - 우유 급식률 : 초등학교 77%, 중학교 23%, 고등학교 16%
 - 우유 보조급식 대상 확대
 - *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등 ⇒ 도서·벽지 학생 등으로 확대
 - 최적생산을 위해서는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
 - 육우(젖소수소) 대책 마련
 - 육우 균급식 물량 확대 및 대량수요처 발굴을 통한 수요처 확보
 - 안정적 낙농생산 기반유지
 - 간척지, 농지 등 일정지역에 낙농단지를 지정하여 목장 이전이 가능도록 제도화 필요

라. 육계

1) 현황 및 문제점

- 한·미 FTA 육계 협상 내용
 - 10~12년 후 관세 철폐
 - 통닭(18~20%), 냉동(가슴살, 날개)(20%) : 12년 철폐
 - 냉장육(18%), 냉동다리(20%), 닭고기 가공품(30%) : 10년 철폐
- 미국산 가격 경쟁력
 -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
 - 2000년대 이후 국내시장에서 최고 79%의 점유율을 기록

- 미국인들은 가슴살을 선호함에 따라 저가 부위인 냉동닭다리를 수출
- * 관세가 철폐되면 시장점유율도 현재 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

2) 요구사항

5-4. 일반농가 시장점유율 유지책 마련(육계)

- 일반농가 시장점유율 유지
 - 육계시장의 일정부분(30~50%)을 일반 농가 생산량으로 충당
 - 지역별 브랜드화 및 기능성 닭고기 생산 체조성 지원
 - 일정부분 일반농가 생산량으로 충당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마련
- 육계 사육농가 농가사육비 우선지급
 - 계열회사의 도산 등 문제점 발생 시 사육비는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법적 장치 마련

마. 양곡(쌀)

1) 현황 및 문제점

- 처리능력 : 2010년 말 기준 전체 벼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은 41.9%임

〈2010년 말 전체 벼 유통량 대비 처리능력〉

(단위 : 천톤/조곡)

유통량(A)	소속	시설능력(B)		비율(B/A)	
		건조능력	저장능력	건조비율	저장비율
4,295	농협	2,568	1,237	59.8%	28.8%
	민간	826	564	19.2%	13.1%
	계	3,394	1,801	79.0%	41.9%

* 유통량 추정(조곡기준) : 4,295천톤 (벼 생산량 5,965천톤의 72%)

- 정부지원 : 건조저장시설 정부지원은 매년 감소

- 2008년 110개소 지원에서 2011년 29개 지원으로 74% 감소

(단위 : 억원)

구 분	2007	2008	2009	2010	2011
예산(국고)	258	253	239	207	89
사업량	110개소	110	72	80	29

* 2012년 건조저장시설 정부예산 반영 : 29개소 (농식품부 ⇨ 예산처)

□ 부족시설

- 2020년까지 800톤 기준 총 750개소(매년 80개) 확충 필요

(단위 : 천톤/조곡)

생산량	유통물량	필수물량 (유통물량의 60%)	부족시설
5,555 (쌀4,000)	4,000	2,400	600 (750개)

2) 요구사항

5-5. RPC시설현대화 사업량 및 정부 지원금 확대(쌀)

- 사업량 : (2011) 29개소 ⇨ (2012~2020) 매년 80개소

- RPC 시설현대화 및 구조개선 대책 마련 (쌀)

- 사업량 : (2011) 29개소 ⇨ (2012~2020) 매년 80개소

- 보조비율 확대 : (2011) 일반 : 국고 30%, 지방비 10%, 자부담 60% ⇨ (2012) 일반 : 국고 50%, 지방비 10%, 자부담 40%

- 국고 비율을 현행 30%에서 50%로 상향 조정해야 함.

6. 농산물생산비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농림어업용 일몰기간이 2012년 6월로 도래하고 있어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 면세유가 폐지 될 경우 농어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될 뿐만 아니라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할 시점에서 경쟁력 제고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남<면세유>.
- 특히, 면세유 일몰 기간 연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연장이 불가피해 사문화 된 조항인데 일몰 연장을 위한 사회적 갈등 비용만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-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가부채경감과 농작업 대행으로 영세·고령·부녀농 등 취약농가의 영농애로를 해소하고자 2008년 10월부터 사업 시작<농기계은행사업>
- 농협중앙회 자체자금 1조원(2010년 말 기준 7,500억원)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3년 이후 예상 손실이 연간 600억원 발생 될 것으로 보여 농업인이 호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곤란 함.
 - 농기계은행사업 시행 농·축협 대부분이 중앙회의 자금지원에 의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수익성을 도모할 경우 이는 농가 부담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음.
- 농기계는 영농을 위한 소비재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생산재로서, 구입 시 가격에 부담을 느껴 응자를 주로 이용하는데, 응자 금리가 3%대로 농업소득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방안으로 농기계 구입

이자율을 낮춰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의욕 고취에 기여 할 필요성이 있음.

나. 요구사항

6-1.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

-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몰기간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영구화해야

6-2. 농협중앙회, 농기계은행사업 정부 지원 대책 마련

- 기 투입된 농협 1조원 자금을 정부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는 정부 차손보전금으로 지원
-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장기임차 시 담보를 농신보로 지원
- 직영조합에 대한 농기계 보관창고 등 시설비 보조 지원
- 중고농기계 임대손실 보전

6-3. 농기계구입자금 금리 인하

- 응자지원 금리 조정 : (현행) 응자 금리 3%
 - ⇒ (변경) 1% 인하

7.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는 GDP 대비 9.5%수준으로 OECD평균인 19.5%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
- 복지는 시혜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정책 핵심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함.

-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20년 이상 앞선 초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, 도시근로자의 작업 환경보다 열악하여 각종 사고와 질병에 노출
- 의료기관 및 의료 인력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(종합병원 94.3%, 의료인력 75.8%) 농어업인들이 의료 서비스 혜택이 열악한 실정
- 농업인의 40% 이상이 농부증을 앓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, 증상을 경감하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센터 및 전문병원이 전무
-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본인부담률 비중이 50%이상에 이를 정도로 보장성이 취약하고 빈축사, 휴·폐경 농지가 특례적용을 받고 있지 못함.
- 일부 대학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내에 전국의 읍면 지역에 위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농어촌 지역이라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수학하고 있는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됨.
-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읍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입학 지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됨은 물론 농어촌 일반 고등학생들의 기회가 직간접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.

나. 요구사항

7-1. 농어촌 현실에 맞는 의료체계 개선

- 농업노동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농부증 등의 치료와 연구를 전담하는 국립농업인병원 설치
- 농업인 인구비율, 지리적 편의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조를 지

원하는 형태의 광역단위 국립 농업인 병원 설치

-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가방식 개선
 - 휴·폐경 농지, 빈 축사 등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, 부과표준소득에서 특례적용(경감 확대 및 제외)

7-2.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어촌특별전형 제도 개선

- 농어촌특별전형 내 특목고 포함 방침 철회

7-3. 농촌형 국민기초생활제도 도입

- 농촌의 소득평가 및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을 골자로 한 '농촌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' 도입

7-4. 농촌복지 관련 법안의 일원화

- '삶의 질 향상 특별법'과 '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'의 통합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 강화

8. 농업인 노동 및 농작업 재해보험제도 개선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농어업인들은 타산업 종사자들이 질병이나 사고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건강에 대한 안전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
- 현재 국회 내 '농업인 노동재해보상보험법' 제정안 등이 제출된 상태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황인데 정부에서 예산 및 형평성 문제로 인해 난색을 표하고 있음(농업인노동재해보장법).

-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, 영세 농업인들은 현재까지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보험 가입률이 저조함.
- 현재 30가지 농작물 보험 대상품목이 있지만 재배가 적거나, 생산 비중이 작은 농가는 현재까지 보험정책에서 제외되므로 품목 확대 필요

나. 요구사항

8-1. 산재 수준의 농업인 노동재해보상보험법 도입

-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농업인 노동재해보장보험법은 전업농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% 이상인 겸업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, 요양·휴업·장애·간병·유족 등으로 인한 급여는 각각 기준에 따라 지급됨.

8-2.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확대 및 정부 지원 확대

- 농작물 재해보험 : (현행) 국고 : 50%, 지방비 : 25%, 자부담 : 25%
 - ⇒(변경) 국고 : 60%, 지방비 : 25%, 자부담 : 15%
-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: 태풍,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농산물의 주산지가 점차 사라지며 이에 대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한 농산물의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조속히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함.

9. 농업계 의견이 반영 된 농협 신경분리 완수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2010년 말 농협중앙회 자본금을 기준으로 경제사업 부문에 30%를 배정하면, 4조 7천억 원 정도의 자본금이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, 이는 기존 사업을 겨우 현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함.
- 산지유통(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등 산지 조직화·규모화)와 소비자 유통 대응을 위한 경제지주회사에 필요한 현금화된 자본이 1조 6천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.
- 기존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인력·조직 개편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.
- 현재처럼 시군지부가 유지될 경우, 교육지원·경제 부문 인력에 과다 인건비 지출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아, 사업개편 이전 경제 사업이 지난 만성 적자 요인을 해소할 수 없음.
- 농협중앙회의 자회사간 업무영역 조정, 방만한 조직 정리 등의 현장지향적인 구조개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
- 경제 자회사 중 일부 자회사가 통폐합될 전망이나 일부에 그치고, 추진 일정도 2012년이 아닌 2013년이나 시작될 예정임.
 - NH무역과 농협목우촌, 농협유통 등 수출업무가 중복된 자회사들의 통폐합은 농협의 통합 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농협중앙회의 자구 노력 및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임.

나. 요구사항

9-1. 농협 신경분리 자본금 확충방안 마련

- 농협중앙회 신경분리(사업분리)의 근본 취

지인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달성하려면 경제사업 부문에 6조원 이상의 자본금이 투입되어야 함.

○ 경제사업 부족 자본은 정부가 최소 2조 원 이상 지원금을 반드시 추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사업 수행이 가능도록 해야 함.

9-2. 농협 시군지부 폐지 및 금융지점화

□ “현재 중앙회, 시·도본부, 시·군지부 등 3단계 조직을 2단계”로 즉, 기존 시·군지부는 사업 분리 즉시 폐지 및 권역통합하여, 은행업만 수행하는 시·군 단위 금융지점(출장소)로 전환해야 함.

9-3. 사업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자회사 통폐합

□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자회사를 통폐합해야 함.

○ 자회사들의 산지·소매 단계의 수급 조정 및 올바른 유통조성이 이뤄져야 수출 진흥 및 농식품 소비촉진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통폐합·조정을 통해 체계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함.

10. 농업 금융 경색 완화 및 농업인 세제 개편

가. 현황 및 문제점

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(농신보) 기본재산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운용 능력을 높여 농어업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해야 함<농신보>.

○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출연금 확대를 통하여 2009년 현재 1조3,748억원의

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상당 수준 건전화되었음.

- 대규모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모태펀드 조성 등의 노력도 중요하나, 한·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, 농업재해 빈발, 생산비 급등, 유통여건 변화로 인해 농가경영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, 농신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.
- 후계농업경영인 등 선도농업인에 대한 우대보증 제도가 있으나, 담보력·신용도 부족과 농협 부분보증 기피 관행 등으로 영농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임.

□ 현재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반 농지처럼 8년 이상 자경농에 한해 그 세를 감면토론 지원하고 있으나 자경이 8년 이하인 농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<농지은행>

- 농지 소유에 애착이 강한 농업인이 농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농지를 매도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농지를 환매하는 것이므로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농업인에게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은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목적과도 배치 됨.

□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농산물 수입개방, 도농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업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목돈 마련 기회와 농가부채를 갚을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인데, 2012년 이자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일몰이 종료됨에 이에 대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<농어가목돈마련저축>.

- 2011년 말까지 가입분 : 비과세, 2012년 가입분 : 일반과세
- 농가(어가 제외)목돈마련저축 이자에 대한 과세 전환 시 연간 116억원의 실질 농가 소득 감소

- 이자율 : 저소득 11.5%(3년, 1ha 이하), 저 소득 15.1%(5년, 1ha 이하), 일반 7%(3년, 1 ha~2ha 이하) 일반 8%(5년, 1ha~2ha 이하)

〈농업소득 및 농가부채 증가 추이〉

(단위 : 천원, %)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
농업소득	12,092	10,406	9,654	9,698	10,098
농업소득률	44.3	39.9	37.4	36.4	37.1
농가부채	28,161	29,946	25,786	26,268	27,210

자료 : 통계청

- 농협 조합 등의 예탁금(3천만원 이하) 이자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·서민의 재산형성지원과 농협 등 농어민·서민 금융기관의 경쟁력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<비과세예탁금>.
- 그러나 비과세예탁금의 과세 전환 시 조합의 저축 경쟁력 상실로 농업자금 조달차질은 물론 조합의 사업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이에 따른 농촌 경제 혼란 우려
- 2012년까지 발생이자에 대하여 비과세, 2013년 이후 5%, 2014년 이후 9% 과세
- 비과세 예탁금(한도 : 2,000만원)은 2ha 미만 농민 조합원에게는 이자소득(15.4%)이 전원 면제되고 준조합원은 농특세(1.4%)만 납부하고 있으며 연간 2,084억의 조세가 지원되고 있음.

나. 요구사항

10-1. 농신보 기금 확충, 부분보증제도 폐지, 보증체계 개선(1,000만원 이하 소액·생계 대출 전액 보증) 등 농업금융 경색 완화

- 농신보의 지속적인 기본재산 확충을 전제

로 한 보증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.

-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종합자금대출자 등에 대한 지역농협·지자체 등의 사업 컨설팅 및 지도 기능을 강화하여, 농신보 고갈 및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야 함.
- 특히, 1,000만원 이하 소액 및 생계 대출은 전액 농신보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체계를 개선해야 함.

10-2. 농지은행 양도소득세 감면

- 경영회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농지를 매도·판매하는 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

10-3. 조합 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유지

- 농어가목돈 마련 및 농가부채 회수 등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를 유지해야 함<농어가목돈마련저축>.
- 농촌경제의 회생을 통한 도·농간 소득격차 해소 및 조합(저축기관)이 은행권과 동등한 업무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비과세를 연장해야 함<비과세예탁금>.

10-4. 농가소득세 부과방침 철회

- 현재 우리 농업구조는 소위 고소득 농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축산농가와 대규모 시설 농가를 말할 수 있는데, 이를 농가는 대부분 축산사육시설이나 사료, 그리고 유리온실을 포함하여 대규모 시설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들임.
- 이에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각종 FTA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우리의 농업·농촌을 위해 농가소득세 부과방침은 철회되어야 함. ⑯